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5560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5560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가소215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B

변론 종결 2024. 11. 8.

판결 선고 2024. 12. 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가소2154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2024.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9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위탁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8. 3.경부터 피고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론티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9. 6. 1.로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제1조(계약체결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위수탁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의 소재와 그 한계를 명백히 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케 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수탁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약할 것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당사자는 해약에 응해야 한다.

제4조(경영권의 독립) 원고는 피고가 계약하고 있는 운송물량을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물량을 제공하지 않을시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며 운송수입금은 전액 원고가 가진다.

제5조(경영수탁료) 원고는 매월 수탁료 198,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지시 등의 준수) 피고는 관련법규와 관계당국의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이나 위반, 지체 등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처분은 전적으로 원고가 책임진다.

제13조(해약) ①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와 원고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원고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회수한다.

1. 제5조 및 제반 원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20조(계약 해지후의 부채)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의 해약, 또는 해지 후라 할지라도 본 계약서 각항에서 부책하여야 할 제반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월 198,000원의 약정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2. 1. 17.경 원고에게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2통, 영업용 번호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2통,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22. 4.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차전785호로 '원고가 2018. 3.부터 2022. 4.까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약정금 5,682,000원, 공과금 805,960원, 과태료 1,058,340원, 기타 비용 2,000,000원, 독촉절차비용 67,100원 합계 9,61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25. 위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6.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2. 4. 29. 1,000,000원, 2022. 6. 10.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22.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단305호로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를 가압류하였고, 그 후 원고가 9,613,400원을 해방공탁하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차태31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해방공탁금 9,613,400원을 추심하였다.

바. 피고는 2022.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바, 원고는 조속히 피고를 방문하여 정산을 하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하여 차량을 이전등록해 가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22. 10. 26. 피고에게 '계약해지 및 차량이전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2022년 3월 안에 지입료 완납을 못할시 계약해지 및 차량의 이전을 승낙했으며 전화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차량의 빠른 이전을 해주시길 바라며 지입료청구 등의 내용증명은 더 이상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약해지는 피고가 먼저 요구하신 사항이다'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2022. 1. 27.경 원고의 배우자 E에게 해지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E이 번호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도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2022. 1. 27.경 해지되었다. 설령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2022. 1.경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2.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위와 같이 2022. 1. 27.경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2022. 2.부터 2022. 4.까지의 약정금 총 594,000원(= 198,000원 × 3개월)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2018. 3.부터 2022. 1.까지 발생한 약정금은 3,88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약정금 1,208,000원을 초과 지급받았고, 독촉절차비용 67,1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위 돈 합계 7,869,100원(= 2018. 3.부터 2022. 1.까지 초과 수령한 약정금 1,208,000원 + 독촉절차비용 67,100원 + 2022. 2.부터 2022. 4.까지의 약정금 594,000원 + 원고가 2022. 4. 29.부터 2022. 6. 10.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6,000,000원)

중 6,5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의서, 대폐차 동의서, 매매계약서, 현물출자해지용 인감증명 및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정산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여전히 해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2022. 5.부터 2023. 10.까지의 약정금 3,564,000원과 피고가 지출한 2022. 10.부터 2023. 10.까지의 이 사건 차량 보관비용 1,950,000원 및 안산 단원구로부터 차량 주차처분요청에 의한 견인료 550,000원, 이 사건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을 위한 법무사 비용 490,800원 합계 6,554,800원(= 3,564,000원 + 1,950,000원 + 550,000원 + 490,8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초과 수령한 금원은 없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2. 6. 14. '원고는 피고에게 9,61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채권액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22. 1. 17.경 원고에게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2통, 영업용 번호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2통,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2022. 1. 27.경 해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22. 1. 27.경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도장이 날인된 동의서, 대폐차 동의서, 매매계약서, 현물출자해지용 인감증명 및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미지급 약정금 등의 정산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 ② 그런데 피고는 2022. 1. 17.경 원고에게 위 서류들 중에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영업용 번호판만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점, ③ 이 사건 차량의 휴지 신청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2022. 10. 26.자 내용증명에서 "2022년 3월 안에 지입료 완납을 못할 시 계약해지 및 차량의 이전을 승낙"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22. 1.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휴지 신청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영업용 번호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의사로 위 서류 등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3조에서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약할 것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당사자는 해약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22. 10. 26. 피고에게 '계약해지 및 차량이전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2022년 3월 안에 지입료 완납을 못할시 계약해지 및 차량의 이전을 승낙했으며 전화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차량의 빠른 이전을 해주시길 바라며 지입료청구 등의 내용증명은 더 이상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약해지는 피고가 먼저 요구하신 사항이다'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그 무렵 도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0.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2. 11. 26.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의서, 대폐차 동의서, 매매계약서, 현물출자해지용 인감증명 및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미지급 약정금 등의 정산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폐차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취지 참조)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원고의 2022. 10. 26.자 내용증명의 도달로써 해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의 효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2. 6. 14.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채권액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피고의 2018. 3.부터 2022. 4.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채권은 합계 4,474,000원¹⁾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약정금 채권을 5,682,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돈을 포함한 지급명령상의 금액 9,613,400원을 추심하고, 2022. 4. 29.부터 2022. 6. 10.까지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3.부터 2022. 4.까지의 정당한 미지급 약정금보다 1,208,000원(= 5,682,000원 - 4,474,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고, 추가로 2022. 4. 29.부터 2022. 6. 10.까지 6,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7,208,000원(= 1,208,000원 + 6,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독촉절차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독촉절차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2022. 11. 26.경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후인 2022. 5.부터 2022. 11.까지의 약정금 채권 합계 1,386,000원(= 198,000원 × 7개월)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의서, 대폐차 동의서, 매매계약서, 현물출자해지용 인감증명 및 동의서 등을 제출할 청산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차량 견인·구난 운임 요금으로 550,000원을 지출하고, 2022. 10.부터 2023. 10.까지 이 사건 차량의 보관비용 합계 1,950,000원(= 150,000원 × 13개월)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으로 위 돈 합계 2,500,000원(= 550,000원 + 1,950,000원)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채권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법무사 비용 490,8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비용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비용을 곧바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 및 손해배상 채권으로 합계 3,886,000원(= 1,386,000원 + 2,50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208,000원 중 위 약정금 및 손해배상 채권 3,88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2,000원(= 7,208,000원 - 3,8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판사허일승

판사송승훈

1) = 2022. 1.까지의 약정금 3,880,000원 + 2022. 2.부터 2022. 4.까지의 약정금 594,000원(= 198,000원 × 3개월)